2022년도 (재)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19.

행 정 재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행정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성동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2)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
다. 출연내용: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, 축제 및 공연기획, 문화예술교육, 문화·복지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 등

라. 출연금(안): 10,840백만 원

마. 출연 필요성

1)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설립·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,

2)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적·효율적 수행, 지역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증진, 문화 및 복지시설 운영,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성동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 지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2)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
나. 예산조치: 2022년도 본예산 편성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제출 취지

○ 본 동의안은 성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가 설립한 성동문화재단에 2022년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

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2022년도 출연금(안)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2022년	2021년	증감액	주요 증액사유
총 계	**10,840**	9,829	**1,011**	
인 건 비	6,573	5,802	771	•직원 급여 인상분 및 생활임금 기준단가 인상, 퇴직급여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: 254백만원 •복지사업 확대 및 재단 직제개편, 미충원 직원 등에 대한 신규채용(11명) 인건비 증가: 487백만원
경 비	3,647	3,506	141	•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: 15백만원 •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솔루션 도입 수선유지비 증가: 27백만원 •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증가: 25백만원 •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, 광고비, 행사운영비 증가: 56백만원 •직원 복리후생비(피복비 등) 증가: 18백만원
자본적 지출	620	521	99	•용답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옥상 바닥공사 시설비 증가: 20백만원 •성동구립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규사업 도서구입비 증가: 70백만원 •구민대학 피아노 및 캐비닛 물품 구매비 증가: 3백만원

○ 성동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동구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기본재산 및 사업수행을 위해 성동구의 출연이 필요함

○ 2022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(안)은 108억 4,0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.2%인 10억 1,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출연금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사업 확대 및 재단 직제개편, 미충원 직원 등에 대한 신규채용(11명), 생활임금 기준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여 인상분 등 반영으로 인건비가 7억 7,100만 원 증가되고,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솔류션 도입, 사업홍보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, 행사운영비 등 증가로 운영경비가 1억 4,100만 원 증가 되며, 성동구립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자본적 지출이 9,9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봄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출연 동의안은 성동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가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는 바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、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출자、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14조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바, 출연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동의안이라고 판단됨

○ 아울러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구의회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바, 출연금은 추후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